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1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12. 17
- 다. 상 정 일 자 : 96. 12. 23(제50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병일
- 나. 제안사유
  - '97. 1.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 및 한시정원인 온천 개발사업소의 정원 2명이 감 조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 다.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직속기관 : 114명 → 159명(45명 증)
    - 사 업 소 : 27명 → 25명( 2명 감)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휴)

-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및 온천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2명이 감축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첨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12.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의 연차별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 지도직공무원 45명을 '97. 1. 1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함.
-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부칙 제3항 (존속시한)이 '96년 12월 31 까지로 되어 있어 '96. 10. 1자로 존속시한 연장(10년) 승인 신청한 결과 '96. 12. 11자로 존속시한 '98. 12. 31(2년) 연장, 한시정원 2명(토목. 건축 6급 1명, 행정 8급 1명)감축 승인되어 조정하려는 것임.

###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 자치 12200-2162 ('96. 12. 11)호로 '96년말 한시기구 정원연장승인

### 3. 주요골자

- 직속기관 (농촌지도소)에 45명 증하고
- 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에 2명을 감한다.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본 청 : 243명
2. 의회사무과 : 18명
3. 직속 기관 : 159명
4. 사업소 : 25명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15명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한시정원) 화순군 온천개발사업소 정원 5명은 '98. 12.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 (정원의 총수)	
1. 군 본 청 : 243명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과 : 18명		2. (현행과 같음.)	
3. 직속 기관 : <u>114명</u>		3. 직속기관 : <u>159명</u>	
4. 사업소 : <u>27명</u>		4. 사업소 : <u>25명</u>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15명		5. (현행과 같음)	